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1
----------	-----

2021. 9. 14.(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전원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8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전원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기 시행중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상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증진사업 협력 등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복지센터, 지역 의료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8.18.~'21. 8.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 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문을 구체화하여 소방업무에 전념하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은 물론 충청북도민에게 원활한 소방서비스 향상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기 시행중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더하여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전원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1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의자 : 전원표,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황규철,  
이상욱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1. 8. 18. ~ 2021. 8. 23.(의회 홈페이지)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

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자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생략>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생략>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

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위험 노출 등 누적된 PTSD 해소 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근거 마련

## 2. 비용발생 요인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비용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 기 지원사업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4. 비용추계 결과

- 추계의 전제 : 2021년 예산편성액 기준 작성
- 추계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940,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50%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188,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940,000
찾아가는 상담실	148,000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40,000
심리치료프로그램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국고보조금	74,000	74,000	74,000	74,000	74,000	370,000
	심리치료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 출		188,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940,000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48,000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40,000
	심리치료 프로그램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 조달		188,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940,000
의존 재원	소 계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보조금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지방세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	-	-	-	-	-